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06
----------	-------

발의연월일 : 2024. 1. 17.

발 의 자 : 이주환 · 김용판 · 김학용
황보승희 · 정운천 · 김성원
류성걸 · 백종헌 · 구자근
전봉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이미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함.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제출된 개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 있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

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25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① ----- ----- ----- ----- -----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 -----.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 ④ (생 략)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u>경우</u> (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⑥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경우</u>-----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